

##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원도 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경력단절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속초시장

### 1. 사업개요

○ 모집인원 : 168명

시군별 모집인원(명)

합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4,000	716	856	540	308	136	168	316	144	88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28	80	192	76	36	28	44	48	96

※ 모집인원 초과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35~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  
 ※ 2019년도 경력단절여성 특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생애1회 지원)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원 \*생애1회지원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5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병행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체크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있어야 사용가능하며 사후에 환급처리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포인트)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 '20. 4. 27.(월) 09:00 ~ 5. 15.(금) 24:00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통해 회원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파일로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군청,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서면 접수는 하지 않음)

○ 선정방법 : 정량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 시·군청 여성부서, 새일센터 》

○ 시·군청 여성부서(18개소)

시군명	주소	부서명	전화번호
춘천시청	춘천시 시청길 11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3-250-4218
원주시청	원주시 시청로 1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3-737-2735
강릉시청	강릉시 강릉대로 33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팀	033-640-5278
동해시청	동해시 천곡로 77	가족과 여성가족팀	033-539-8470
태백시청	태백시 태봉로 21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033-550-2162
속초시청	속초시 중앙로 183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3-639-2442
삼척시청	삼척시 청석로 3길 16-41	평생교육과 여성새일센터팀	033-570-4082
홍천군청	홍천군 석화로 93	행복나눔과 여성가족팀	033-430-2149
횡성군청	횡성군 태기로 15	주민복지지원과 여성가족팀	033-340-2344
영월군청	영월군 단종로 8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3-370-2125
평창군청	평창군 군청길 77	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310
정선군청	정선군 애산로 25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033-560-2319
철원군청	철원군 삼부연로 51(제1별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033-450-4388
화천군청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33-440-2342
양구군청	양구군 관공서로 38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341
인제군청	인제군 인제로187번길 8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33-460-2216
고성군청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7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	033-680-3661
양양군청	양양군 안산1길 36	복지과 여성가족팀	033-670-2357

○ 새일센터(8개소)

센터명	주소	세부주소	전화	비고
춘천새일센터	춘천시 외솔길 25	여성가족연구원 3층	033-243-6474	민영
원주새일센터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033-748-3131	민영
강릉새일센터	강릉시 강릉대로 317	한국레저타운빌딩 3층	033-643-1148	민영
동해새일센터	동해시 발한로 182	동해 YWCA 1층	033-533-6077	민영
삼척새일센터	삼척시 청석로 3길 16-41	삼척시평생학습관 1층	033-570-4081	직영
영월새일센터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2층	033-370-1333	직영
정선새일센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정선군여성회관 1층	033-560-2319	직영
양양새일센터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	양양군여성회관 2층	033-670-2357	직영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부서 및 새일센터에 담당자에게 문의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모집시작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 있는 여성(신규등록자 포함)
  - 모집 시작일 현재 강원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집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자납부액 기준)
    - 모집시작일 전월( '20년 3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해야 함.
- ①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액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88,344	150,025	195,200	237,652	286,647	326,561
	지역	63,778	147,928	203,127	254,909	308,952	349,099
	혼합	-	151,927	198,402	242,715	298,124	343,406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붙임 1 참조)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 지원제외 대상 >

- 모집시작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단,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지원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모집시작일 기준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고용부, 타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실업급여, 취·창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회 프로젝트, 희망챌린저 사업,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 ※ 동시지원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10종) ※ 첨부 서류는 모집시작일(4.27.)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워크넷에 구직 등록해야 출력(발급)가능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5년 이상)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 및 세대 구성원 확인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붙임1 참조>

-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붙임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확인서 첨부 필수,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⑥ 모집시작일 전월분(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붙임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근로기간을 모집시작일 기준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이력이 없는 경우, 온라인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

⑧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1> \* 온라인 작성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2> \*온라인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⑩ 워크넷 구직정보 제공·조회 동의 변경 요청서 1부. \*온라인 첨부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 첨부(JPG, PDF 파일가능, 여러 건은 압축)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음

## 4. 선정기준

### ○ 정량평가(100점)

항 목	평 가 방 법
가구소득 (50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3월) 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미취업기간 (40점)	고용보험 상실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거주기간 (10점)	강원도 최종 전입일 부터 모집시작일 전일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점수	50점	48점	46점	44점	42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가구 소득	65% 미만	65-70%	71-80%	81-90%	91-100%	101-110%	111-120%	121-130%	131-140%	141-150%
점수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미취업 기 간	5년 이상	4.5년 이상	4년 이상	3.5년 이상	3년 이상	2.5년 이상	2년 이상	1.5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거주 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단위 : %, 원, 월, 가구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65	직장		65,018	84,251	103,092	122,857	142,519	160,546	180,237	201,381	220,167
	지역		21,217	55,836	93,344	111,837	138,781	160,865	185,031	211,011	233,499
	혼합		65,642	85,130	104,090	124,059	144,298	162,883	183,101	204,864	224,298
70	직장		69,920	90,383	111,701	131,392	151,927	174,636	195,200	216,142	237,652
	지역		26,904	68,412	107,524	123,752	150,605	178,276	203,127	228,554	254,909
	혼합		70,080	91,370	113,007	133,024	153,994	177,425	198,402	220,167	242,715
80	직장		79,924	104,090	126,909	151,927	174,636	198,402	224,298	248,116	268,311
	지역		45,003	95,023	118,159	150,605	178,276	207,077	238,415	267,395	289,976
	혼합		80,076	105,268	128,407	153,994	177,425	201,381	228,710	253,956	276,843
90	직장		89,997	116,578	144,298	169,219	198,402	224,298	253,956	276,843	311,116
	지역		66,574	107,524	140,967	172,149	207,077	238,415	274,444	298,842	333,411
	혼합		90,383	117,289	146,236	171,908	201,381	228,710	260,770	286,647	326,561
100	직장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248,116	276,843	311,116	343,406
	지역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267,395	298,842	333,411	368,522
	혼합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253,956	286,647	326,561	368,580
110	직장		110,529	142,519	174,636	208,444	242,715	276,843	311,116	343,406	368,580
	지역		107,345	138,781	178,276	219,531	261,006	298,842	333,411	368,522	393,349
	혼합		111,701	144,298	177,425	212,215	248,116	286,647	326,561	368,580	402,261
120	직장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343,406	368,580	402,261
	지역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368,522	393,349	426,790
	혼합		121,451	158,243	195,200	233,076	268,311	311,116	368,580	402,261	437,059
130	직장	76,609	129,924	169,219	208,444	248,116	286,647	326,561	368,580	402,261	437,059
	지역	38,739	121,735	172,149	219,531	267,395	308,952	349,099	393,349	426,790	462,265
	혼합		131,392	171,908	212,215	253,956	298,124	343,406	402,261	437,059	471,545
140	직장	82,471	140,649	183,101	224,298	268,311	311,116	368,580	402,261	437,059	471,545
	지역	50,929	136,471	188,153	238,415	289,976	333,411	393,349	426,790	462,265	495,914
	혼합		142,519	185,993	228,710	276,843	326,561	402,261	437,059	471,545	519,517
150	직장	88,344	150,025	195,200	237,652	286,647	326,561	402,261	437,059	471,545	519,517
	지역	63,778	147,928	203,127	254,909	308,952	349,099	426,790	462,265	495,914	544,044
	혼합		151,927	198,402	242,715	298,124	343,406	437,059	471,545	519,517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모집시작일 전월(3월) 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이하는 배점은 50점으로 함.

○ 최종선정 :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및 모집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가 따라 대상자 최종 선발

## 5.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0. 5. 25.(월) (예정) \* 선발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방법 : 강원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문자 발송 등

### ○ 예비교육

- 일시 : '20. 5. 26.(화) ~ 5. 29.(목) (예정)
- 방법 :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gwwoman.ezwe1.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온라인상 업무 매뉴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현장교육 실시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현금신청,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원칙이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경력단절여성등 구직 활동 지원금 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해당 시군 여성부서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 온라인 작성(강원일자리정보망)

<b>구 직 활 동 계 획 서</b>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 직 활 동 개 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 직 활 동 계 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 직 활 동 지 원 금 사 용 계 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 구직활동계획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기준자료가 되오니 성실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서식 2 ] \* 온라인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시 작성하여 파일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적격여부 판단,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소득기준 판단, 정보 전달 등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제공 항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 및 거주지 확인, 지원금 지급(이지월, 강원일자리정보망, 농협은행)	사업 종료시 까지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 전달, 지원금 지급(이지월, 강원일자리정보망, 농협은행)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취업자 및 실업자 판단	
	중앙 및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 이력	중복 수혜 여부 판단	
계좌번호	긴급 생활안정지원		
소득 기준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소득 기준 판단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 수집방법 : 일모아시스템, 강원일자리정보망 및 e새일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관리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수집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청·선정·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은 아래와 같이 동의/미동의 합니다.

연번	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서명
1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가구원 작성 범위 : 미혼자(부, 모), 기혼자(배우자, 자녀)

- (선택적 동의)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시, 경력단절여성등 코로나 19 긴급생활안정 지원(1인 40만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코로나19 긴급생계·생활안정 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    미동의 )

2020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 가구소득 산정방법

####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 형제·자매의 소득이 많을 경우 포함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은 모집시작일 전월분 건강보험 고지·납부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 사례별 예시

#####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3인,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 가구원 수 2인, 동거중인 부 또는 모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③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④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부+모+본인)

※ 위 ① ~ ③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결혼여부	부	모	제출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제적등본1))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2)
	생존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본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증빙서류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사망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실종 등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4)(본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배우자가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1) 제적등본 : 20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 2) 실종 등 서류 : 가출 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 3)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붙임 2】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직등록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 <a href="https://www.work.go.kr">https://www.work.go.kr</a></li> <li>- (기존) 로그인 → 구직신청관리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li> <li>- (신규) 회원가입 → 구직등록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li> <li>※ 구직등록기간이 마감된 경우 연장해야 출력(발급)가능</li> </ul>
주민등록 등·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a href="http://www.gov.kr">www.gov.kr</a>)</li> <li>· 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li>※ 국적 미취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li> </ul>
가족관계 · 혼인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a href="http://efamily.scourt.go.kr">efamily.scourt.go.kr</a>)</li> <li>· 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ul>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a href="http://www.gov.kr">www.gov.kr</a>)</li> <li>·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li> <li>· 스마트폰 앱 이용 : “M건강보험” 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li> <li>·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li> <li>· 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ul>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p><b>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a href="http://www.gov.kr">www.gov.kr</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홈페이지(<a href="http://www.ei.go.kr">www.ei.go.kr</a>)</li> <li>·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li> <li>※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ul>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